

2000. 12. 23(토)  
제66회제2차정례회 제7차본회의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 12. 2 제천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4
- 다. 상 정 일 자 : 2000. 12,19(제66회제2차정례회산업위제4차회의)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이종식 )

### 가. 제안사유

- 현행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이 적어 조례제정 이후 신청 건수가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으며, 현행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등 타 조례에 의한 영세서민의 수혜가 가능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

### 나. 주요골자

- 현행조례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종철)

### ▣ 법 적 검 토

-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 행정 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친후,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 ▣ 행정적 검토

- 현행 조례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원가능 금액이 1건당 최고 325,000원(최고 5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연 6.5%에 해당하는 이자)으로 현실적으로 영세노점상의 수혜액이 적어 조례제정 이후 신청건수가 없으며,
-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서민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 9. 29 폐지 의결한 사항이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민경환 위원 )

- 현재 제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있는지?
- 기금도 적립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신청이 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 한 건도 신청이 없다는 것은 홍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기금을 세워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 이 집행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 영세노점상지원자금, 영세민지원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등이 보증인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면 시에서 도와줄 의지가 있으면 보증인 없이 또한 기존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 한 도내에서 이자를 보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조례가 폐지될 수 있겠습니까?
- 제천시에 영세노점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자금이 있다고 홍보해 보신적이 있는지?
- 단속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역할이 아닌지?

- 노점상을 철거하면 그분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다음 철거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 조례를 폐지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에게 홍보를 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천시 행정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나. 답변요지 ( 건설과장 이종식 )**

- 95년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안됨.
- 88~89년도에 용두 복개천 주변에 점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도점포를 마련했는데 그 임시가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전업자금으로 융자금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했었는데 가설점포가 이미 철거되어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했음
- 준칙이 내려 올 당시에는 가설 점포를 임시 설치한 영세노점상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 자체적으로 판단한 노점상이 177개 정도이고, 직접적으로 단속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했음.
- 홍보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임
- 철거 대상자들이 중앙시장 안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종으로 나와서 하는 분들이 있었음.
- 영세노점상들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는 유명무실하다고 봄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민경환 위원 )**

- 제천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앞으로 당분간 더 존속이 돼서 현재 177개의 노점상이 있는데 언젠가 법규정에 맞게끔 노점상들을 철거해야 된다고 보며
- 이 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 두어야 할 것 같아 본 조례안에 대한 폐지를 반대합니다.

## 7. 심 사 결 과

-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금조례폐지조례안 1 부. 끝.